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339
----------	------

2020. 2.2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1339	2020.2.5.	2020.2.12.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2.25.)	원안 동의

### III. 제안설명 요지(권기욱 도시계획국장)

#### 1)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 내용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29 일대	64,133.0	감)9,110.9	55,022.1	2007.10.25. (서울시도시 계획위원회 제2007-390호)	경춘 제2녹지
폐지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93-12 일대	5,036.4	감)5,036.4	-	1985.01.18. (건설부도시 계획위원회 제23호)	태릉녹지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경관광장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7,535	감)7,535	-	2016.09.01. (서울시고시 제2016-267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노원구 공릉동 29번지 일대	-	증)40,293	40,293	-	-

2) 입안사유

- 2010년 폐선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2018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등록 문화재 제300호) 일대를 철도와 문화·관광을 테마로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녹지, 광장
- 기타구역 : 개발제한구역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9. 8. 13. ~ 8. 26.(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일간신문(아시아 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 의견청취결과 : 없음

## 5)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는 자연녹지이자 일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금회 신설계획한 도시계획 시설(공원) 내 신·증축계획(3개동)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증축계획 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바목, 사목에 따른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 및 편익 시설로서 별도의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없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회 제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내 국유지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재원조달계획 제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대상 국유지 재원조달계획 수립</li> </ul>	반영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계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차계획대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회 신설계획한 공원부지 밖 별도부지에 계획한 바, 현황 소유자(국토부)를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법정주차대수 확보계획임.</li> </ul>	반영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사업 추진 시 우리시 도시공간 개선단과 사전협의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협의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입 후 사업 완료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매권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매권 대상 아님</li> </ul>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물순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인·허가 전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빗물유출 가능여부 및 빗물관리 시설 도입 필요성 등을 우리구 치수과와 협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겠음.</li> </ul>	반영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이상인 경우로 한정)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하였음.</li> </ul>	반영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사업지 중 일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태릉과 강릉(사적201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원형복원예정지임.</li> <li>해당지역 내 문화재 및 주변환경 현상 변경 행위를 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방지를 위한 협의 및 절차 준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청 소유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터파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설도입으로 인한 훼손은 없으므로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사항이 없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구역내 문화재청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별도의 훼손을 하지 않을 것임. (문화재청 부지내 시설물 조성계획 없음)</li> <li>디오라마관 신축예정지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릉동 29-59 필지는 문화재청 국유 재산으로 사용협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청 소관 토지에 대해서 사용협의 완료</li> </ul>	반영

## 6) 노원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9. 9. 3.
- 의견청취결과 : 원안가결

## 7) 환경성·교통성·재해영향성 검토

### ○ 환경성 검토

-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기질 및 수질 등 총 14개 항목 검토
- 결과: 환경 악영향 없음 및 경관변화 미비함(검토 완료)

### ○ 교통성 검토

- 가로 교통량 평일 2대/시 증가, 통행속도 0.2km~0.9km/h 감소
- 교차로 교통량 평일, 휴일 5대/시 증가, 평균 0.7~0.1초/대 지체
- 주차수요 20~21대 확보 필요
- 결과: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합리화 필요

### ○ 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영향성평가 심의 개최 결과 별도의견 없음
- 결과: 조치계획과 관련계획 준수하여 시행

## 8) 기타

### ○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예산 : 6,6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확보		미확보	비 고
		집행	잔액		
계	6,600	1,850	4,100	650	
시 비	2,700		2,700		시 재배정
특교금	1,500	100	1,400		
특교세	600	600			
구 비	1,800	1,150		650	미확보토지매입

### ○ 추진경위

- '78.08.30.: 경춘 제2녹지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
- '85.01.18.: 태릉 녹지 결정(건설부고시 제23호)

- '16.09.01.: 광장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호)
- '18.06. : 경춘선 공원화 사업 완료
- '19.08.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9.09.0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9.10.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요청(區 → 市)

#### IV.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의견청취안은 노원구 구 화랑대역 일대의 경춘제2녹지와(일부<sup>1)</sup>, 9,110.9 $m^2$ ) 태릉녹지(전부, 5,036.4 $m^2$ ), 경관광장(전부, 7,535 $m^2$ )을 폐지하고, 폐지한 부지들과 현재 비도시계획시설인 폐철도부지(18,610.7 $m^2$ )를 함께 공원(문화공원, 40,293 $m^2$ )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1) 경춘제2녹지 전체 64,133.0 $m^2$  중 9,110.9 $m^2$  폐지 추진 (경춘제2녹지 : 중랑천의 경춘 철교를 지나 시작되어 공릉로와 화랑로를 따라 대상지까지 지정되어 있음)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29 일대	64,133.0	감)9,110.9	55,022.1	2007.10.25. (서울시고시 제2007-390호)	경춘 제2녹지
폐지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93-12 일대	5,036.4	감)5,036.4	-	1985.01.18. (건설부고시 제23호)	태릉녹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경관광장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7,535	감)7,535	-	2016.09.01. (서울시고시 제2016-2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노원구 공릉동 29번지 일대	-	증)40,293	40,293	-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변경





## “배경 및 현황”

- ‘10년 폐선된 경춘선의 공원화 사업이(붙임1) ’18년 완료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구 화랑대역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기존의 기차 전시물 등을 리모델링하고, 기차카페·철도관 등 기차·철도를 주제로 한 문화시설을 새로 조성하며, 이들 시설들을 공원시설로서 자치구가 일괄 운영·관리하려는 것임.



※ 경춘선숲길 공원화 사업과 구 화랑대역 일대(자료: 시설계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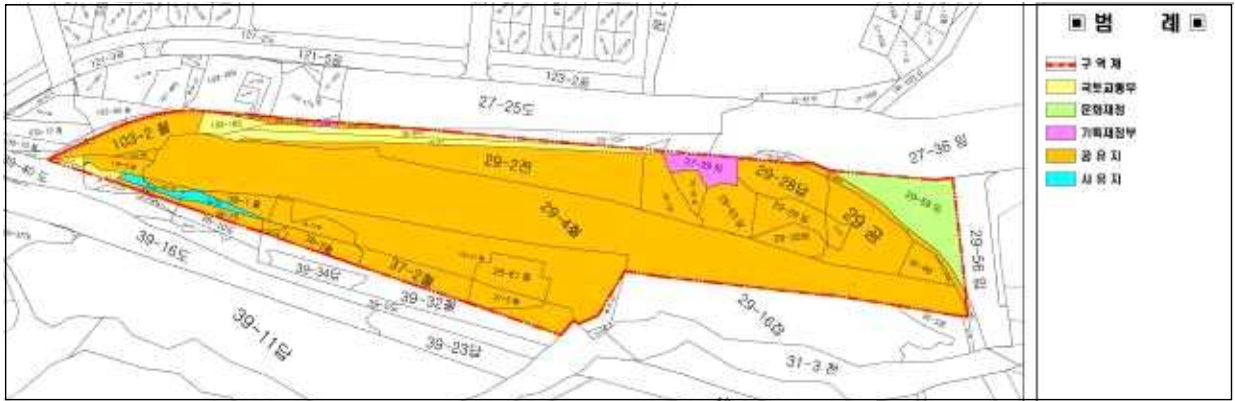
-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는 구 화랑대역(등록문화제 제300호)을 중심으로 경관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경춘제2녹지와 태릉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측 광장과 북측 녹지를 잇는 중앙부는 폐철도부지로서(비도시계획시설) 기차 전시물 등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녹지 및 광장은 노원구가 관리하고 폐철도부지는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고 있음.



- 대상지 주변은, 남동측으로는 육군사관학교가, 북서측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주택지와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태릉·강릉 등 역사자원과 서울여대·서울과학기술대·삼육대 등의 대학교가 분포해 있음.



- 대상지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일부 국유지와 사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유지이고<sup>2)</sup>, 국유지 일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사유지는 자치구가 보상할 계획임.



구분	면적(㎡)	구성비 (%)	토지확보계획		비고
			토지보상 (단위:백만원)	토지사용	
합계	40,293.0	100.0	650		
국유지	소계	4,820.0	11.9	406	
	기획재정부	622.0	1.5	406	
	국토교통부	2,281.0	5.7		
	문화재청	1,917.0	4.8	-	무상사용협의
공유지	소계	35,163.0	87.3		
	서울시	33,867.0	84.1	-	구 관리운영 문화공원결정 시 구 관리공원
	노원구	1,296.0	3.2	-	
사유지	3개 필지	310.0	0.8	244	

-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로 66억원이 산정된 가운데, 이 중 59억 5천만 원이 예산 확보되어 구 화랑대역 리모델링, 기차 구매 등에 18억 5천만 원이 기집행되었고, 아직 예산 확보되지 않은 토지보상비 6억

2) 대상지 내 폐철도부지(경춘선숲길) 및 경관광장의 사유지는, 당초 각각 국방부 토지(22,216㎡) 및 한국철도공사 토지(7,535㎡)였으나, 국방부 토지는 다른 사유지와 교환을 해서('17.4. 토지교환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9호), '18.8. 국방부 교환승인 완료) 서울시가 확보하였고, 한국철도공사 토지는 서울시가 보상한('20.2. 약 74억원) 후 확보함



5천만원은 올 상반기에 노원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

		사업비 (총예산)	기확보 예산	미확보 예산	집행기간	비 고
시설 조성	시설 신규 설치	4,020	4,020	-	~ 2021.12.	기차카페, 철도관 등
	기존시설 리모델링	80	80	-	~ 2020.10.	전시열차
토지 보상	기획재정부 (622.0㎡)	406	-	406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2,281.0㎡)					
	사유지 (310.0㎡)	244	-	244	미 정	공탁추진3)
기집행	구 화랑대역 리모델링, 기차 구매 등	1,850	1,850	-	2016.10.~ 2018.12.	-
계		6,600	5,950	650		

## “타당성과 실행력”

- 경춘선숲길, 경의선숲길(붙임2) 등 폐선 부지의 공원화는4), 그 자체로 도시공간과 환경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시민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효과 외에도, 조성된 선형공원 주변으로 공원·녹지·문화시설·공공시설 등이 추가로 확충되고 연결되는 도시 공공공간의 네트

3) 사유지 3개 필지 중 1개 필지는 소유자 사망으로 등기부 정리 후 보상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소유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서 우선 공탁을 추진하고, 공탁 불가시에는 미지급용지로 처리할 계획임(붙임3)

4) 경의선숲길은 해당 구간을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한 반면 경춘선숲길은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경의선숲길은 공항철도·경의선을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공원,철도)이 중복결정된 경우로서 공원으로 결정하더라도 토지보상이 아닌 지상부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인 반면, 경춘선숲길은 철도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게 되면 해당 토지 보상 문제에 당면하게 되므로, 공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일반 부지로서 토지 사용료만 지급하되, 국유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함으로써 해당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파악됨(붙임4).

워크 구축의 파생효과가 보다 기대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경춘선숲길 일부 구간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이 의견청취안은, 폐선 공원화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그 효과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이러한 공공공간의 파생사업들은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존의 철도·기차시설을 활용하여 철도 주제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자산을 특화하여 장소성을 창출하는 일환으로서 경춘선숲길의 문화적 콘텐츠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동일 장소임에도 녹지·광장의 관리주체(노원구)와 폐철도부지의 관리주체(서울시)가 달라서 일관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부지를 통합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노원구) 대상지의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90% 이상을 예산으로 기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올 상반기에 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므로, 계획된 사업기간에('18.~'21.)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39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녹지, 광장, 공원) 결정변경(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29 일대	64,133.0	감)9,110.9	55,022.1	2007.10.25. (서울시고시 제2007-390호)	경춘 제2녹지
폐지	녹지	연결녹지	노원구 공릉동 93-12 일대	5,036.4	감)5,036.4	-	1985.01.18. (건설부고시 제23호)	태릉녹지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광장	경관광장	노원구 공릉동 29-61번지 일대	7,535	감)7,535	-	2016.09.01. (서울시고시 제2016-267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문화공원	노원구 공릉동 29번지 일대	-	증)40,293	40,293	-	-

### 3. 입안사유

- 2010년 폐선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2018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등록문화재 제300호) 일대를 철도와 문화 관광을 테마로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증대되는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녹지, 광장
- 기타구역 : 개발제한구역

###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9. 8. 13. ~ 8. 26.(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일간신문(아시아 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 의견청취결과 : 없음

### 6.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는 자연녹지이자 일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금회 신설계획한 도시계획 시설(공원) 내 신·증축계획(3개동)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증축계획 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바목, 사목에 따른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 및 편익 시설로서 별도의 건축범위 결정 필요성 없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제시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내 국유지 현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자원조달계획 제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대상 국유지 자원조달계획 수립</li> </ul>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계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차계획대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회 신설계획한 공원부지 밖 별도부지에 계획한 바, 현황 소유자(국토부)를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라 부설주차장 및 법정주차대수 확보계획임.</li> </ul>	반영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사업 추진 시 우리시 도시공간 개선단과 사전협의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협의 하겠음.</li> </ul>	반영
물순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매입 후 사업 완료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매권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매권 대상 아님</li> </ul>	반영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인·허가 전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빗물유출 가능여부 및 빗물관리 시설 도입 필요성 등을 우리구 치수과와 협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겠음.</li> </ul>	반영
하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이상인 경우로 한정)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완료 하였음.</li> </ul>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업지 중 일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태릉과 강릉(사적201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원형복원예정지임.</li> <li>• 해당지역 내 문화재 및 주변환경 현상 변경 행위를 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방지를 위한 협의 및 절차 준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 소유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고 터파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시설도입으로 인한 훼손은 없으므로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사항이 없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구역내 문화재청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고 별도의 훼손을 하지 않을 것임. (문화재청 부지내 시설물 조성계획 없음)</li> <li>• 디오라마관 신축예정지가 현상 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릉동 29-59 필지는 문화재청 국유 재산으로 사용협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 소관 토지에 대해서 사용협의 완료</li> </ul>	반영

## 7. 노원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9. 9. 3.
- 의견청취결과 : 원안가결

## 8. 환경성·교통성·재해영향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자연환경, 생활환경, 대기질 및 수질 등 총 14개 항목 검토
  - 결과: 환경 악영향 없음 및 경관변화 미비함(검토 완료)
- 교통성 검토
  - 가로 교통량 평일 2대/시 증가, 통행속도 0.2km~0.9km/h 감소
  - 교차로 교통량 평일, 휴일 5대/시 증가, 평균 0.7~0.1초/대 지체
  - 주차수요 20~21대 확보 필요
  - 결과: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합리화 필요

○ 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영향성평가 심의 개최 결과 별도의견 없음
- 결과: 조치계획과 관련계획 준수하여 시행

9.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예산 : 6,6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확보		미확보	비 고
		집행	잔액		
계	6,600	1,850	4,100	650	
시 비	2,700		2,700		시 재배정
특교금	1,500	100	1,400		
특교세	600	600			
구 비	1,800	1,150		650	미확보:토지매입

○ 추진경위

- '78.08.30.: 경춘 제2녹지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
- '85.01.18.: 태릉 녹지 결정(건설부고시 제23호)
- '16.09.01.: 광장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호)
- '18.06. : 경춘선 공원화 사업 완료
- '19.08.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19.09.0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9.10.14.: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요청(區 → 市)

붙임 : 관련도면 각 1부. 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대상지 현황사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변경

